

	국가지원 2유형 장학금 운영 지침	규정번호	3-4-17	
		제정일자	2012.03.01	
	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국가지원 2유형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고 장학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가계 형편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기회의 확대와 건전한 면학 풍토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

제2조(기본방침) ① 국가지원 2유형 장학금(소득분위 1~7분위 이하) 지원을 통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

②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(신입생) 및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

③ 대상자 선정에 엄정한 지침 적용으로 장학금의 교육적 가치성 제고

제3조(장학금(학비감면)재원) 국가지원 2유형 장학금

제4조(국가지원 2유형 장학금 지원자격) ①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된 소득분위가 1~7분위 이하인 학생

② 신입생(재입학생 포함)

③ 재학생(복학생 포함)

제5조(장학생 성적기준 및 선발기준)

① 신입생

- 내신 :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/2이 6등급 이내
- 수능 : 2개 영역(언어, 수리, 외국어, 기타 2과목)이 6등급 이내
- 장애인은 내신, 수능 7등급 이내
- 부득이한 경우 재단 권고사항인 내신, 수능 7등급까지 가능
- 검정고시 : 합격증명서
- 해외고등학교 : 졸업증명서

② 재학생

- 학점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100점 만점 80점 이상(F학점 포함)
(단, 부득이한 경우 재단 권고사항인 70점까지 가능)
-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 70점 이상 가능(F학점 포함)
- 직전학기 성적 이용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
-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 성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신입생 성적 적용

- 제6조(장학금 지급기준)** ①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(1~7분위 이내)별로 일정한 장학금을 차등지급 함
- ② 대상자로 확인된 학생들은 등록금고지서에서 우선감면을 원칙으로 함.(단, 신입생, 복학생은 현금지급)
- ③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원금 상환 처리
- ④ 등록금 범위 내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 중복 수혜 가능

- 제7조(학생위원회 운영)** ① 장학규칙에 의해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
- ② 장학생의 자격 요건, 수혜자 선발, 장학금액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
- ③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구성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음(단, 위원장은 보직기간으로 함)

- 제8조(장학사정관 제도 운영)** 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학생친화형 장학생 선발 방법 운영
- ② 장학사정관을 두고 장학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선발에 활용
- ③ 장학사정관의 주요 업무는 저소득층 장학생을 선발하고, 통계 작성 등을 수행
- ④ 소득 수준 및 대학생 자녀의 수, 면학 의지 등을 심층 상담하여 선발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2012년 3월 1일 이전에 선지급한 국가지원 2유형 장학금은 본 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.